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40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위성곤 · 김기표 · 박희승
이학영 · 박균택 · 주철현
이건태 · 이재관 · 박정현
박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군·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관광협회가”를 “관광협회 또는 지부”로 한다.

이 경우 지역별 관광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① ----- ----- ----- ----- -----. <u>이 경우 지역별 관광협회는 장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u>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u>관광협회가</u>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u> ----- ----- --- <u>관광협회 또는 지부가</u> ---- ----- -----.